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8. 11. 7.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5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5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8. 11.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 병 하

가. 개정이유

-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개정골자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8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등 조례안은 제2의 건국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과 '98. 10. 26.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추진지침에 의하여 마포구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등 위원회는 안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구의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구청장 및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으로 규정 하였으며, 특히 동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는 바, 추후 동 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제2의 건국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위원회 구성은 타구와 비교할 때 동일한가?
- 답변요지(조병하 총무과장) : 동일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위원회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참석수당은 어느 예산에서 즉, 국비, 시비 또는 구비인지?
- 답변요지(조병하 총무과장) : 우리구 예산으로 지급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진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8. 11.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제안이유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제15조

제2의진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98.10.1 대통령령 제15,903호) 제10조

4. 조례(안) : 별 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예산조치 필요(위원 수당, 여비 등)

서울특별시마포구조재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조재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부회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2. 부구청장,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상임 위원회) 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